1. ThreadToken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토큰이 아닌 웹어플리케이션상에서 발급하는 토큰이다(일종의 포인트)
   1. ThreadToken은 쓰레드 웹을 통해 이더리움과 교환할 수 있다.
   2. ThreadToken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비율로 이더리움과 교환된다.
   3. 교환시 ThreadToken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필드에 수량으로서 저장된다.
   4. 교환시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 주소에 저장된다.
   5.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된 이더리움은 모두가 조회가능 하지만 인출할 권한은 관리자(스마트 컨트랙트 배포자)에게만 있다.
2. 아이디어 지갑은 쓰레드 웹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ThreadToken 저장소이다.
3. 아이디어DB는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참여자, 문서URI, 지분정보 등)를 저장하는 저장소이다. 아이디어DB는 아이디어 지갑을 포함한다.
4.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쓰레드 웹을 통해 등록한다.
   1.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블록체인에 바로 등록할지 여러 사람의 참여를 통해 등록할 지 결정할 수 있다.
   2. 참여에 의한 결과물을 블록체인에 등록할 지를 아이디어 제안시 결정하고 제시한다
   3. 등록된 아이디어 문서는 IPFS 상에 저장된다.
5. 아이디어 참여자는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지분을 합의를 통해 분배 받는다
6. 아이디어 투자자는 아이디어 투자자는 아이디어의 제안이나 참여자가 아니면서 선 투자에 의해서 아이디어의 지분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1. ThreadToken을 소비하여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투자한 토큰에 해당하는 지분을 분배 받는다.
   2. 투자자가 투자한 ThreadToken은 해당 아이디어 지갑에 할당된다.
7. 아이디어 제안자, 참여자, 투자자들의 확인과 합의를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지갑내용, 합의 기록등의 관련 기록을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해당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1. 이때 해당 아이디어 문서는 IPFS상에 저장되어 있으며 삭제할 수 없다.
8. 아이디어 구매자는 ThreadToken을 소비하여 아이디어를 구매하고 이때 해당 아이디어의 NFT 토큰이 아이디어 구매자의 지갑으로 발행된다.
   1. 아이디어가 구매자에 의해 판매되었을 시 아이디어 구매자가 지불한 ThreadToken + 아이디어 지갑에 할당되어있는 ThreadToken 이 아이디어 제안자, 참여자, 투자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된다.
9. NFT토큰에는 해당 아이디어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토큰을 통해 구매자는 언제든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1. NFT 토큰은 웹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다.
   2. 아이디어 참여자들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NFT토큰을 발급해선 아니된다.

예상되는 문제

1. 이용자들에게 아이디어 DB가 운영자에 의해 위/변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하게 할 것인가.
   1. 오라클 문제가 관여함.

오라클이란 외부 데이터(아웃체인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함

* 1.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 중간자 방안등이 연구되고 있음.

1.2.1 특히 중간자 방안은 운영 재단의 신뢰도에 기인함.

* 1. 오라클 과정은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만약 사람이 개입한다면 휴먼 미스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자동화 시스템이 개입한다면 system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완(시스템 이중화, 데이터 손상방지, 백업대응 등)할 필요가 있음.

1. ThreadToken을 이더리움을 받고 교환해줘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가.
   1. 유사수신행위에 걸리지 않을 최선의 방법은 직접적, 간접적인 현금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 즉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한 토큰들이 생태계 내에서 자체적인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임.
   2. 이더리움(가상자산)을 받고 토큰등의 포인트로 바꿔주는 방식은 예전의 ICO를 할 때 많이 사용되던 방식임 지금도 유효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3.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더리움등의 가상자산을 국내법에서 정의한 자금(경재활동을 위해 준비된 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름. 만약 가상자산이 자금으로 인정이 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음)
   4. 21년 9월 25일 발효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에 따라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들이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토큰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을 취함.

2.4.1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를 받음.